

# 제1776호

2020. 9. 8.(화)

발행인 : 영등포구청장  
편집인 : 홍보미디어과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전화 : 02-2670-7561

# 영등포구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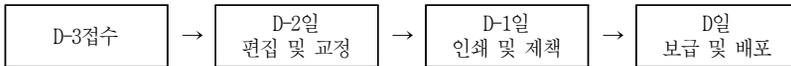
## 입법예고

· 제2020-150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영등포구홈페이지<<http://www.ydp.go.kr>(영등포소식→새소식→영등포구보)>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구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 02-2670-7561 / 전송: 02-2670-3581)
- ◎ 구보발행일은 매주 목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발행, 공포 등 필요시 발행일 조정 가능)
- ◎ 구보게재접수는 D-3일(월요일)까지 접수



영등포구 발간등록번호

3180244-0083-2020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0-150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 부조리 신고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조리 신고대상 확대 및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

### 2. 주요 내용

- 기존 신고대상에 상근인력 및 민간위탁기관 등을 추가하여 확대·운영 (안 제2조)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부패와 관련된 부조리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신고기한 변경 (안 제4조)
- 보상금 환수절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안 제10조)

###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당산동3가), 전화 02)2670-3007, FAX 02)2670-35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현하는데**” 를 “**구현하는 데에**” 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등” 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 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 외 상근인력관리 규정」 제3조에 따른 상근인력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임직원
  - 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영등포구 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사무를 위탁한 수탁기관의 임직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과 관련된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를 “**부조리**” 로 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을 “**구청장**”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 을 “**제3조**”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7조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을 “**보상금**” 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환수) 구청장은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의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부칙

이 조례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 략)

제4조(신고기한)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5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구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② (생 략)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마치고 보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여부는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③ (생 략)

제8조(보상금의 지급) ① 제3조의 규정

2. (현행과 같음)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과 관련된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한다.

제5조(신고방법) ① 부조리-----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  
-----  
-----.

제7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① 제3조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보상금의 지급) ① 제7조에 따른

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에 의한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며 환수 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환수) 구청장은 신고자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의 신고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